

의안  
번호

7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2.  
전문위원 김 동 성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양순임 의원 외 15명

나. 의안번호 : 제77호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라. 회부일자 : 2022. 11. 17.

### 2.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성북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성북구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재능기부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재능기부사업 추진범위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재능기부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10. ~ 2022. 11. 16.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제정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능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주 안에 있지만, 전문봉사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폭넓은 분야의 재능기부자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재능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봉사자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체계화할 필요성 있음.

### □ 주요내용

-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기본이념 및 재능기부의 용어를 정의하고,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으로 법률, 의료, 문화예술, 전문기술, 사회복지, 그 밖에 필요한 분야로 정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범위를 정하고,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 여건조성과 지원체계 구축으로 재능을 가진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성북구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의견조회 시 다음과 같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정안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제시

○ '재능기부'는 크게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조례 제정은 실익이 없으며,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추가, 보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10개의 자치구에서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11. 10. 기준임)

###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현황

(2022. 11. 10 현재)

#### ■ 서울시 : 총 10개 자치단체

| 자 치 단 체 명                                          | 비 고                   |
|----------------------------------------------------|-----------------------|
| 성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 성북구 등<br>(미제정 : 15개구)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